

우체국암보험(2종, 이차암보장형)(갱신형) 상품요약서

이 상품요약서는 보험약관 등 우체국암보험(2종, 이차암보장형)(갱신형)의 기초서류에 기재된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및 보험가입 자격요건

① 상품의 특이사항

Q : 우체국암보험(2종, 이차암보장형)(갱신형)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 우체국암보험(2종, 이차암보장형)(갱신형)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번 지급하는 암 진단자금 : 첫 번째 암 보장은 물론이고, 두 번째 암 진단시에도 보장하여 드립니다.
- 암 진단시 종신까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저렴한 보험료로 일반암 진단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 고액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 진단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급하여 드립니다.
- 한번 가입으로 평생토록 든든하게 보장하여 드립니다.(10년 만기 종신갱신형)
- 0세 자녀부터 70세 부모님까지 가입 가능한 온가족 암치료 전문보험입니다.

- 10년 만기 생존시마다 건강관리자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구좌 기준)

② 보험가입 자격요건

■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

구분	가입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최초계약	0~70세	10년 만기 (종신갱신형)	전기납	월납
갱신계약	10세 이상			

■ 가입한도 : 1구좌 (0.5구좌 단위)

■ 건강진단 여부 : 전건 무진단

■ 계약의 갱신

갱신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안내 (보험료 등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갱신 → 계약자가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종료 ※ 피보험자에게 암치료보험금(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종신까지로 하며,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계약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적용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상될 수 있음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항

① 상품의 구성

주계약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선택)
-----	-------------------

② 보험금 지급사유

아래 내용은 계약자가 가입하신 상품이 보장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요약 정리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약관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구분	고액암	일반암
암치료 보험금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경과간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1,800만 원	900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4,200만 원	2,100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6,000만 원	3,000만 원	
	보험기간 중 최초의 암진단이 확정되기전에 갑상선암, 기타피 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	90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	210만 원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300만 원		
이차암 치료 보험금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차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 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	3,000만 원		
건강 관리지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100만 원		

- 주) 1. 피보험자에게 「이차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종신까지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암 진단 확정일 이후의 건강관리자금은 종신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5. 이차암보장개시일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난 날로 합니다.
6.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일반암, 이차암, 고액암(백혈병, 뇌종양, 골종양, 췌장암, 식도암 등),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의 정의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차암의 진단확정은 이차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새로운 암(원발암)으로 진단확정 또는 첫 번째 암이 발생한 기관과 다른 기관에 전이된 암(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9. 갱신계약의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암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

시일 이후 이미 암치료보험금이 지급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 종양과 인과관계(전이 및 동일부위에 대한 재진단 포함)가 있는 경우 체신관서는 해당 암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 갱신계약의 경우, 9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대상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사망시 수익자 제외)가 모두 동일한 계약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지정대리청구인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 -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체신관서는 이를 지급하지 않음

③ 일반적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 고지의무(계약자가 체신관서에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체신관서에 피보험자의 과거의 지병, 현재의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종 및 기타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체신관서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체신관서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기 등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자해하거나,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보험범죄로서 사법당국의 철저

한 수사로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의 효력

- 체신관서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체신관서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체신관서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은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체신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연체된 보험료에 소정의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사유 \ 구비서류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 고
만 기 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암 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
사 망 시	○	○	○	
암 진 단 시	○	○	○	
해 약 시	○	○		
환급금대출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① 예정이율

Q : 예정이율이란 무엇인가요?

A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우체국암보험(2종, 이차암보장형)(갱신형)에 적용한 예정이율은 연단위 복리 2.5%입니다.

② 예정위험률

Q : 예정위험률이란 무엇인가요?

A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는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구분		20세	40세	60세
암발생률	남자	0.000351	0.002458	0.013455
	여자	0.000532	0.005697	0.009325
기타피부암발생비율	남자	0.023901	0.010896	0.010817
	여자	0.009685	0.003803	0.012648
갑상선암발생비율	남자	0.157837	0.301029	0.044460
	여자	0.516421	0.501960	0.298721
고액암발생률	남자	0.000177	0.000272	0.001319
	여자	0.000110	0.000206	0.000641
제자리암발생률	남자	0.000003	0.000061	0.000431
	여자	0.000079	0.001060	0.000721
경계성종양발생률	남자	0.000051	0.000173	0.000323
	여자	0.000083	0.000261	0.000234

경과기간		1년	2년	3년
전이암발생률	남자	0.145785	0.085582	0.023283
	여자	0.096851	0.059617	0.026027
두 번째 원발암발생률 (40세 기준)	남자	0.007052	0.006292	0.005983
	여자	0.005070	0.004828	0.004749

- 주) 1. 전이암발생률 : 1차 원발암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2차 전이암
 2. 두 번째 원발암발생률 : 1차 원발암과 다른 기관에 발생한 2차 원발암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배당

Q : 계약자배당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체신관서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이익배당금으로 환원하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② 과거 5년간 계약자배당 실적 (단위 : %, 억 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기준율	금액
5.3	1,096	5.3	1,293	5.2	1,406	4.9	1,511	4.7	1,376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①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Q :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산출되며,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A : 우체국보험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체신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②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 보험가입금액(구좌수) 1구좌, 40세, 10년 만기, 전기납, 단위 : 원)

경과기간	남 자		여 자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1년	288,000	51,600	340,800	67,000
3년	864,000	403,600	1,022,400	399,600
5년	1,440,000	699,400	1,704,000	663,000
7년	2,016,000	875,500	2,385,600	820,300
10년	2,880,000	1,000,000	3,408,000	1,000,000

주) 계약해지 시점에 미경과 선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위 금액에 가산합니다.